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가합58180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주식회사 D(부동산등기부상 표시: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2. 10. 5.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978,968원 및 그중 49,833,630원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2021. 7.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2022. 2. 22.까지는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8. 10.부터 2021. 9. 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2022. 2. 22.까지는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145,338원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1. 9. 2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2022. 2. 22.까지는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1. 22. 접수 제257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제2항),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순 번	체결일	피보험자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기간	내용
1	2020. 9. 28.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90,000,000원	2020. 9. 24.~ 2021. 9. 23.	피고 B와 F 사이의 물품 판매위탁계약에 따른 수 탁자 피고 B의 물품판매 대금채무의 지급보증
2	2020. 10. 30.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50,000,000원	2020. 10. 28.~ 2021. 10. 27.	피고 B와 G 사이의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매수자 피고 B의 대금채무의 지 급보증
3	2021. 2. 16.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100,000,000원	2021. 2. 8.~ 2022. 2. 7.	피고 B와 H 사이의 수입 대행계약에 따른 위탁자 피고 B의 수입대행수수료 채무의 지급보증

나. 피고 C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F에 대한 물품판매대금채무, G에 대한 대금채무, H에 대한 수입대행수수료채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각 피보험자들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일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1	F	2021. 7. 3.	2021. 8. 27.	85,145,338원
2	G	2021. 6. 4.	2021. 6. 24.	49,833,630원
3	H	2021. 7. 26.	2021. 8. 9.	100,000,000원
합계				234,978,968원

라. 한편 피고 C는 2021. 1. 22.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1. 22. 접수 제2570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위 각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각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 C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978,968원 및 그중 49,833,630원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30일 이후인 2021. 7. 24.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2. 22.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8. 10.부터 30일 이후인 2021. 9. 8.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2. 22.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85,145,338원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30일 이후인 2021. 9. 26.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2. 22.까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20. 9. 28. 및 2020. 10. 30. 각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제1,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체결일에 각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G은 2021. 6. 4.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F은 2021. 7. 3.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각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20. 9.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1)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1. 1. 22. 이미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서 정한 각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내용인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서 정한 각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전인 2020. 9.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도 위 대금 상당액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D 앞으로 피고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5,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내용이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라 적어도 각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합계 134,978,968원(= 85,145,338원 + 49,833,630원)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운영 및 재산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구상금채무 발생 개연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구상금채무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피고 C는 피고 D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수익자인 피고 D의 약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4)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보민, 판사 이승훈, 판사 최지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서구 I(J) 지상 K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동주택

지1층 268.89㎡

1층 218.13㎡

2층 218.13㎡

3층 218.1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서구 I 대 48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7.3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7.31/595.92. 끝.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임을 전제로 “공동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기재를 오기로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